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28
----------	-----

2017. 11. 29.(수)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정영수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7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2017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2017년 11월 24일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영수 위원장)

가. 제안이유

○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안 제2조)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건(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광주)

- 본 조례 제정안은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과 지원 사업의 범위, 지도·감독의 권한 등을 규정 하고,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2.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생 수 15명 이상

3.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 운영 지원 필요

## 3. 관련조문

- 제3조(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한 경우
2.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기관 운영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운영비 추계		연도별 운영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97,380	97,380	97,380	97,380	97,380	486,900
가. 다사리학교 60,000,000원×1기관=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나. 평생열린학교 37,380,000원×1기관=	37,380	37,380	37,380	37,380	37,380	37,380	186,90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교육국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